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 무안지구
- 나. 공사구분 : 산림사업
- 다. 공사위치 : 무안군 일원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마. 공사개요 : 62.45ha
- 바. 추정금액 : 금88,782,000원(추정가격 80,711,000원, 부가가치세 8,071,000원)
- 사. 기초금액 : **금88,782,000원**
- 아.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위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을 따릅니다.

(단위 : 원)

합계(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579,181	1,466,006	1,937,004	192,633	983,538

2.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장 소
2026. 7. 9.(목) 10:00 ~ 2026. 7. 15.(수) 10:00	2026. 7. 15.(수) 11:00	무안군산림조합 계약담당관 PC

※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제출방법

-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

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가. 방법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생략)
- 나. 장소 : 무안군산림조합(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18-1)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 점소재지가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신안군, 함평군, 나주시, 영광군** 중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불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결격사유 항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우리조합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시공 지적 업체, 노임체불(대금지급 일로부터 10일 이상)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업체는 1년간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 무효로 합니다.

나. 자격 미달로 판명된 자와 1순위 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1년 동안 우리시와 수의 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한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하자 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등 신용이 떨어진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전 및 계약 이행 중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10. 입찰 관련 규정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조합과 이견이 있을 시 우리조합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 (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가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0. 5.)을 따릅니다.
-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1)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 무안군산림조합 정소연(061-453-2204)
- (2) 입찰에 관한사항은 : 무안군산림조합 김지애(061-453-2204)
-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에 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7. 9.



무안군산림조합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업체)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무안군산림조합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무안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산림조합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산림조합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당,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무안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무안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지체없이 무안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수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무안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회,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무안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